

분류기호 문서번호	국무총리 지시 제 8 호	기 안 용 지 (전화 : 738-1382)	시 행 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준영구. 10. 5. 3. 1.	행정조정실장	국 무 총 리
수 신 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91. 4. 19		
보 조 기 관	조정관 심의관 서기관 	보 조 기 관	부 서 통 제 1991. 4. 19 통제관 1505-25-1991-04-19 국무총리
경 유 수 신 참 조	수신처 참조	발 신 명 의	1991. 4. 19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제 목	통신 및 전기 시설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방안 시달		
<p>1. 통신 및 전기 시설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p>			
<p>2. 특히 관련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91말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관련법령·준칙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관련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p>			

1505-25-(2-1)일(1)갑
85. 9. 9. 승 인

인쇄용지 2급

〈도로점용료 감면 방안〉

1) '91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이설공사비를 상호면제하는 현재상태를

유지함.

- 상기 1)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준칙 및 관련조례 개정등 조치 강구 (건설부가 서울시와 협의)

2) 동기간 내에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토록 함. 끝.

수신처 : 가(21, 30, 31, 35), 나(01)

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

국무총리지시 제 8 호 (738-1382) '91. 4. 19

(738-1382)

191. 4. 1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통신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방안 시달

1. 통신 및 전기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2. 특히, 관련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91말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관련법령·준칙 등이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 도로점용료 감면 방안 〉

- 1) '91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이설공사비를 상호면제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함
 - 상기 1)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준칙 및 관련조례 개정 등 조치강구(건설부가 서울시와 협의)
 - 2) 동 기간내에 관계부처간 협의하여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제도정비를 완료토록 함. 끝.

수신처 : 가(21,30,31,35), 나(01)

道路占用料 關聯 關係部處 異見 調整結果 報告

1. 推進 經緯

- o '85.1.1. 以後 建設部와 通信公社 · 韓電間 협정에 의거, 道路 占用料와 道路工事로 인한 施設移轉費를 相互 免除해 옴.
※ '85년 相互免除協定 締結經緯 : 국무총리행정조정실에서 내무부, 건설부, 체신부, 서울시의 의견조정을 거쳐 관계부처 실무자가 합의각서에 서명('83.9.9)
- o '90. 12. 28, 서울시는 두 公社에 도로점용료 賦課方針 通報
- o '91. 1月初, 두 公社는 서울시 方針 受容不可 通報
- o '91. 2~3월, 總理室 主管 關係部處 實務 調整會議(3回)

2. 關係部處 立場

- o 動資部, 建設部, 遞信部 : 현행 相互免除 상태 유지
- o 서울市 : 相互免除協定 破棄하고, 현행조례대로 占用料 徵收
- o 內務部 : 施設移轉費는 免除, 占用料는 大幅 引下하여 徵收

3. 國務總理室 調整內容

(4.18, 行調室長 主宰 關係部處 次官會議 結果)

- o '91末까지 도로점용료와 이설비를 相互免除하는 現狀態 維持
- o 同期間 内에 관계부처간 협의(국무총리실 주관)하여 現行法令 및 制度上의 問題點 檢討하고, 그에 대한 制度整備 方案 마련

1. 道路占用料 賦課 經緯

- '85.1.1 以後 建設部와 通信公社 · 韓電間 협정에 의거, 道路 占用料와 도로공사에 따른 移設費를 相互免除해 옴.

- 賦課根據

- 道路法 43條 : 道路管理廳은 도로 점용료 부과 가능
- 公衆電氣通信事業法 72條 및 電氣事業法 38條 : 道路上의 通信 및 電氣供給設備 移轉時에는 그 費用을 原因者가 부담해야 함

※ '85.1.1 以前

- 통신공사 : 도로점용료 면제, 이설비는 도로관리청과 통신공사가 50%씩 부담
- 한전 : 도로점용료 납부, 이설비는 도로관리청과 한전이 50%씩 부담

※ '85년 相互免除協定 締結經緯

- 국무총리행정조정실(제2조정관)에서 내무부, 건설부, 체신부, 서울시의 의견 조정 : 관계부처 실무자가 합의각서에 서명('83.9.9)
- 위 합의에 의거, 건설부와 통신공사간 협정체결('83.12.23)
- 감사원 지적 및 건설부 요청에 의거 한전도 통신공사와 같은 조건으로 건설부와 협정 재체결('85.1.1)

- '90.12.28, 서울市는 通信公社 · 韓電에 道路 占用料를 賦課 하겠다고 通報

- '91.1월초 通信公社(체신부) · 韓電(동자부)은 서울市의 점용료 부과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서울市에 通報

2. 道路 占用料 賦課時의 負擔 推定

o 現行의 占用料 賦課 料率

- 地上 : 占用面積 土地價格의 10%

단, 電柱는 500원/본, 철탑은 1,000원/본

- 地下 : 占用面積 土地價格의 3%

※ 근거 : 도로점용료 징수규칙(건설부령) 및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등

o 負擔 推定(現行 占用料率 適用時)

- 通信公社 : 道路占用料(1,708億원)와 移設工事費(198億원)의 差額 1,510億원 新規 負擔

- 韓 電 : 道路占用料(92億원)와 移設工事費(131億원)의 差額 39億원 徵收 必要

- 地自體

· 大都市(서울, 직할시등)는 占用料 收入이 移設工事費 負擔보다 많고,

· 小都市 以下 郡地域은 移設工事費 負擔이 占用料 收入보다 많을 것으로 推定

〈道路占用料 및 移設工事費 負擔 推定〉

(단위:백만원)

區 分	道路占用料(A)	移設工事費(B)	差 異 (A-B)
通信公社	170,798	19,836	150,962
韓 電	9,188	13,088	-3,900
計	179,986	32,924	147,062
〈지자체〉*			
서 울 시	51,008	2,684	48,324
직 할시(5개)	9,631 (1,926)	4,361 (872)	5,270 (1,054)
일반시(21개)	2,553 (122)	3,735 (178)	△1,182 (△56)
군 (39개)	1,095 (28)	6,895 (177)	△5,800 (△149)

* '91. 2. 내무부 표본조사 결과, ()는 1개 자치단체당 평균금액

3. 檢討 意見

가. 關係部處 意見

部 處	立 場
건설부 체신부 동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료와 이설비 상호 면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신부는 지상물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소액 납부 용의
내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설비 면제, 점용료는 대폭인하(정액제 적용등)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조례의 규정대로 점용료 징수하고, 이설비 부담

※動資部 : 점용료 부과시 기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상호면제 협정 파기하고
공공성 전기요금 감면 축소 검토

※道路占用料 賦課 理由(서울시 立場)

- 서울시는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으로서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점용료 징수 가능
- '91부터 가판점등 영세민들에게도 점용료 부과하는 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 민영화 과정에 있는 두 공사에 대해 점용료 면제할 이유가 없음.
- 노면굴착 후의 원상복구 공사 외에 필요한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요비용등 ('90경우 188억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점용료 징수 불가피

나. 總理室 意見

- 道路占用料와 移設 工事費를 相互免除하는 현재상태 維持
- 關係法令을 改正하여 制度的 補完
 - 전국의 도로관리청과 각각 별도 협정을 체결하는 번거로움 해소
 - 지자체 실시후 재원확보 차원에서의 占用料 徵收 試圖에 事前 對備

〈理由〉

- 1) 現行條例의 규정대로 징수할 경우, 財源配分上 不合理
 - 通信公社의 占用料 追加負擔은 요금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全國民의 부담으로 재정형편이 상대적으로 良好한 대도시에 추가지원하게 되어 財源配分上 합리성 缺如
- 2) 地域間 均衡發展 沮害
 - 財政自立度가 낮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된 일반시·군에서 징수하여, 재정형편이 좋은 서울시 및 직할시에게 배분하는 것이 되어 地域間 형평 상실 및 地域의 均衡發展 沮害
- 3) 점용료 賦課時 公共性 측면에서 施行해 오던 電力·通信事業 再檢討로 社會的 問題 發生 憂慮
 - 점용료 부과시 市民 서비스 목적으로 設置·運營하고 있는 公衆電話 부스 減縮 또는 料金大幅引上 불가피
※ 공중전화 부문 적자액 : 년간 495억원('89)
 - 한전의 경우 서울시등 公共機關에 대한 電力料金 減免措置 縮小할 우려
※ 한전의 서울시에 대한 전력요금 감면액 : 년간 총 218억원
 - 상수도 전력 산업용요금 적용(135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원가 이하 공급(20억), 유수지 배수펌프장 비수기 기본요금 면제(16억원), 보안등 전주설치 허용(14억원) 등

4) 地下占用料 부담 과중으로 電力 및 通信設備의 地中化
지해 우려

- 88올림픽 시가지 美化를 위해 대거 지중화 實施

- 통신공사 : '84년 1,836km → '90년 13,223km(620% 증가), 3,048억원 소요
- 한 전 : '85년 154천m² → '87년 361천m² (134% 증가)

- 占用料 賦課時 향후 地中化 확대계획 위축 憂慮

- 통신공사 : '91-'94에 1,999km지중화에 585억원 투입 계획

〈지하점용료와 지상점용료 비율〉

(억원)

구 분	계	지 상	지 하
통신공사	1,708	271(15.9%)	1,437(84.1%)
한 전	92	4(4.3%)	88(95.7%)

5) 移設費 및 占用料 負擔 方針에 대한 一貫性 缺如

- 이설비와 점용료를 相互 免除한 것은 金額間의 衡平에
의한 것이 아니고, 兩事業의 公共性 측면을 감안한 것임.
- 過去 점용료가 이설비보다 적었으나, 地價上昇으로 점용료가
증가하자 이를 徵收하려는 것은 負擔原則의 일관성 缺如

※ 통신설비 사례 : '83년 경우, 점용료 36억원, 이설비 69억원(추정)